

##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

안녕하십니까? 귀하(사)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.

골프연습장, 악기소매업, 자전거소매업, 손발톱 미용업, 사진촬영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.1.1.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시행됩니다.

위 업종을 영위하는 귀하(사)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되오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이 아래 업종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〈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)〉

구 분	업 종
악기 소매업	악기소매업(523341, 523349)
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	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(523970)
골프연습장 운영업	골프연습장 운영업(924307, 924308)
기타 미용업	손톱 발톱 미용업(930205)
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	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(749400)
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	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(523951, 523952)

\* 사진촬영업은 당초 「결혼사진」에만 적용하였으나, 2019.1.1부터 「전체거래」로 확대됨.

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(126 ①-①) 또는 아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(관인생략)

안내 :

조사관, Tel

##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



### ■ (가입방법) ①~③ 중 선택

- ①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

상 호	홈페이지	연락처
(주)케이티	www.hellocash.co.kr	02) 2074-0340
(주)엘지유플러스	taxadmin.uplus.co.kr	1544-7772
한국정보통신(주)	www.kicc.co.kr	1600-1234
퍼스트데이타코리아(유)	www.moneyon.com	1544-7300
(사)금융결제원	www.kftcva.or.kr	1577-5500

### ③ 국세상담센터 ☎ 126 (현금영수증) ARS를 이용하여 가입

☎ 126 → ①(홈택스상담) → ①번(현금영수증) → ②번(상담센터 연결) → ①번(한국어) → ④번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 → 사업자번호(10자리) → 비밀번호 설정 → 대표자 주민번호(13자리) → 비밀번호(4자리) → ①번(가맹점 가입)

### ■ (미가입시 불이익)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× 1% 가산세 부과

##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



- (발급방법) 신용카드단말기, 인터넷, ARS 중 선택
- (발급의무 기준금액)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
\*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
- (미발급시 불이익) 미발급금액 × 20% 가산세 부과 ('19.1.1.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)  
\* '18.12.31.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금액의 50% 과태료 부과

##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



- (부착의무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'계산대나 계산대 근처, 사업장 출입문 입구'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
- (미부착시 불이익) 50만원의 과태료 부과